[별지 제3호]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<예시> <신설 2008.12.29., 개정 2023.6.30.>

ㅇ 사 업 명 : 2027년~2028년 정부세종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
ㅇ 발주기관 : 정부청사관리본부
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주식회사 차세대아이씨티융합센터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디지털홍보영상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<신설 2009.9.21.>
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 <신설 2009.9.21.>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,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(2027년 27,690,000원, 2028년 27,690,000원/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 <신설 2009.9.21.>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제3조에서 이동 2009.9.21.>

2026년 9월 3일

발주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(인)
제조사 또는 공급사 ㈜차세대아이씨티융합센터 (인)

# 유지관리 기술지원협약 특수조건[디지털홍보영상시스템]

**제1조(적용범위)** 본 협약특수조건은 「정부세종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」 사업 협약에 있어 정부청사관리본부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㈜차세대아이씨티융합센터(이하 "을"이라 한다) 사이에 적용한다.

**제2조(유지관리대상)** 유지관리대상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.

**제3조(유지관리 범위)**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
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
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
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
⑤ 법·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
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, 분석 및 조치
⑦ 시스템 개선·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
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
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
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
⑪ 기타 "갑"과 "을"이 상호 합의한 사항

**제4조(계약기간)**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

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**제5조(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)**①'갑'이 '을'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.

②'갑'과 '을'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(매월, 분기별, 일시지급 등)를 결정한다.

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
**제6조(지체상금)** "을" 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,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"용역계약 일반조건"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7조(인수인계의 명확화)**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.

**제8조(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)**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"갑" 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"을" 은 이에 따라야 한다.